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환경 변화, 기업구조조정·이전 및 대규모 재난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6.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구체화하고, 시·도지사가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4조의32)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며,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의33)

다.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 여건 변화 분석,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4)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 검토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4를 제54조의36으로 하고, 제54조의32부터 제54조의3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32(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하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법 제2조의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같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같
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7. 그 밖에 법 제62조의2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 밀집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면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만제곱미
터당 3개 이상 밀집된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 또는 밀집지역 활성화계획을 작
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이 되는 관할 구역의 범위

2.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종사자 수 등 경영 여건
과 관련된 자료

3. 해당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
원이 필요한 내용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등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3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33(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
2조의23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

2.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의 변화

3.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여건의
변화

4. 지역 고용사정의 변화

5. 지역경제 침체정도 및 지역 경기동향과 전망

6. 제54조의3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 또는 밀
집지역 활성화계획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의 23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제62조의23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경영환경조사단을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지원지역 지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23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을 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만료일에 법 제62조의2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4조의32를 준용한다.

제5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4(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시·도지사는 관할 특별지원 지역에 대하여 법 제62조의2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특별지원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33제1항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 여건 변화 분석
2. 제54조의33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 기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54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5(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2

조의25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
지원지역에 관한 제54조의34에 따른 보고서와 법 제62조의23제2항
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특별지원지역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지
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32(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62조의 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 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32(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 산업단지 또는 중 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하 "밀 집지역"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 신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 같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 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 인 집적지구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같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같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7. 그 밖에 법 제62조의23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면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만제곱미터당 3개 이상 밀집된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 용지 현황, 분양 및 운영 현황 3. 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계획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신청----- -----산업단지 또는 밀집지역 활성화계획을----- -----. 1. 지정 대상이 되는 관할 구역의 범위 2.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종사자 수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자료 3. 해당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33(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23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4조의33(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① ----- 법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 2.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의 변화 3.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여건의 변화 4. 지역 고용사정의 변화 5. 지역경제 침체정도 및 지역 경기동향과 전망 6. 제54조의3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 또는 밀집지역 활성화계획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의23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제62조의 23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지원지역 지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 23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을 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만료일에 법 제62조의2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4조의32를 준용한다.
<신 설>	제54조의34(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시·도지사는 관할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법 제62조의2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특별지원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33제1항의 기준에 따른 중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여건 변화 분석 2. 제54조의33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 기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신 설>	제54조의35(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 25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54조의34에 따른 해당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와 법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연 락 처	042-481-1679